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0. 24.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10월 10일

나. 발 의 자: 이성수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0월 19일

라. 상정일자: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3. 10.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성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 옥외행사(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가 적용되는 옥외행사의 대상과 용어 규정 명확화(안 제2조)
-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 개정(안 제3조)
-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5조)

-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관부서의 역할 조항 신설(안 제7조)
-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정진)

○ 본 개정조례안은

-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 옥외행사(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조례를 보다 명료히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기존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서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옥외행사 및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와 더불어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까지 조례의 적용범위에 포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제출 기한을 행시개시 ‘5일 전’에서 ‘14일 전’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보다 심도있게 심의·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주관부서의 역할을 신설하여 주관부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심의요청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긴급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행사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긴급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보강하였고,
- 안 제12조에서는 행사보험 가입 및 안전관리비 확보 등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옥외행사를 포함한 각종 행사들이 활발히 열리는 가운데, 작년 이태원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참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까지 포함시켰으며, 그 밖에 주관부서 역할 명확화, 긴급안전조치 사항 보강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8
------------	-----

발의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 이성수·우경란·김지연
임헌호 의원(4인)

1. 제안이유

주최·주관이 없는 지역 옥외행사(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사항을 마련하고, 구민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가 적용되는 옥외행사의 대상과 용어 규정 명확화(안 제2조)
- 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 범위 개정(안 제3조)
- 다.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구민의 책무규정 신설(안 제5조)
- 라.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관부서의 역할 조항 신설(제7조)
- 마.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 신설(안 제11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10. 18. ~ 10. 22.)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

가.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선양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

다.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후원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7.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8.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9.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 포함)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②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순간최대 밀집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은 없으나 안전관
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관부서의 역할)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
2. 옥외행사를 후원할 경우 주최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요청
하도록 안내

3.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요청

제8조(안전관리계획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은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이 일반적인 행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또는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보완된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제9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주관부서, 유관기관, 해당 시설의 관계인 등을 안전점검에 함께 참여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요청한다.

제10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 등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교통통제, 질서유지 등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긴급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게 긴급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결과에도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행사를 중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과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
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모든 행사관계자 대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금액 이상의 행사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2.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 이상 안전관리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